

#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7. 4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7. 4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1. 7. 14.(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 
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환경청소과장 박노선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,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코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(안 제6조, 제8조)
  -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함.
  - 건조·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(25~40%미만)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함.
- 음식물쓰레기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(안 제11조)
  - 음식물쓰레기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쓰레기종량 제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고,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

배출량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-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,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-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 방안(안 제12조)
  -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,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·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함.
- 감량의무사업장 중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감량이행율의 제고 수단 마련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수료징수와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들을 법규와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 운용함으로써 자원절약과 구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
- 특히 폐기물처리업자,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감량이행률 제고와 재활용촉진 등을 통한 주민편익제고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확보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